

□ 4단계 BK21사업 서울대학교 창의인재 재료교육연구단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2006.03.01.
 개정 2006.07.01.
 개정 2013.09.01.
 개정 2021.03.01.
 개정 2021.07.01.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4단계 BK21사업 서울대학교 창의인재 재료교육연구단(이하 “재료교육연구단”이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무, 기능) 재료교육연구단은 창의인재양성사업에 관한 사항을 재료공학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한다.

제3조 (구성) 재료교육연구단의 조직은 교육연구단장, 운영위원회, 행정실로 구성된다. 참여인력은 참여교수, 참여대학원생, 신진연구인력, 행정전담인력으로 구성되며, 모든 참여인력은 재료교육연구단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 (교육연구단장)

- (1) 재료교육연구단에 교육연구단장을 두며 교육연구단장은 창의인재양성사업을 총괄한다.
- (2) 교육연구단장은 4단계 BK21사업의 운영 중 재료공학부와 연관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재료공학부의 운영위원이 된다.
- (3) 필요시 교육연구단장과 운영위원회의 논의에 의해 부단장을 선출할 수 있으며, 부단장은 교육연구단장을 보조하는 역할을 한다.

제5조 (운영위원회)

- (1) 재료교육연구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교육, 연구, 산학, 국제협력 분야의 집행위원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둔다. 운영위원은 약간 명으로 구성되며 교육연구단장이 학부장과 논의하여 임명한다.
- (2)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연구단장 또는 학부장이 된다.
- (3) 운영위원회는 재료교육연구단의 모든 업무를 기획하며, 그 의결을 각 위원회에 묻는다.
- (4) 운영위원회는 각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집행한다.

제6조 (소위원회의 구성) 교육연구단장은 사업의 장기적인 운영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수의 인원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조직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위원회에서 제안된 안은 세부 사항 별로 운영위원회 또는 재료공학부의 각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 의결 과정을 거친다.

제7조 (교수회의) 교육연구단장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에 대하여 교수회의를 소집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 (행정실) 원활한 사업운영, 사업비, 연구성과정리, 주관행사개최, 사업평가 등 관리를 위하여 행정실을 두고 행정전담직원을 운영한다.

제9조 (참여교수) 재료교육연구단의 참여교수는 업적성과와 학부기여도가 반영된 재료공학부 교수업적평

가에 따라 선정된 전임교원으로 구성된다.

- (1) 매년 재료공학부 교수업적평가에 따라 참여교수를 교체할 수 있다.
- (2) 최소 참여교수수는 신청당시 참여교수수 35명을 유지해야 한다. 참여교수 수가 35명보다 줄어든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신규 교수 임용 등을 통해 참여 교수 규모를 유지하여야 하며, 예측할 수 없는 사유로 부득이하게 6개월 이내 참여교수 총원이 어려운 경우 연구재단의 승인을 통해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3) 참여교수의 이직, 은퇴 및 기타 사유로 인해 사업단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 재료공학부 교수업적평가 자료를 바탕으로 운영위원회의 논의를 통해 미참여교수로 교체/추가할 수 있다.

제10조 (참여대학원생) 참여대학원생은 참여교수가 지도하는 학생 중 재료공학부에 소속되어 주 40시간 이상 교육 및 연구에 전념하는 전일제 대학원생으로서 고용보험, 건강보험(지역가입자 제외), 국민연금 및 산재보험(이하 4대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제11조 (신진연구인력) 신진연구인력은 국내외 박사학위를 소지한 연구인력으로 아래 기준에 따라 매년 2회 공개채용을 통해 선발한다.

<p>I 정량자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 저명학술지 게재논문 업적(환산편수, 환산보정IF/환산보정ES) - 학술대회 발표논문 편수 - 특허등록 건수 <p>II 정성자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논문의 우수성 - H-index, FWCI - 국제적 학술/연구 활동자료 - 산학협력 연구의 우수성 <p>III 기타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upervisor명은 삭제하고 평가 - 자교/타교출신 비율유지를 위하여 자교/타교 심사를 별도로 할 수 있음 - 계약교수의 채용자격은 박사학위 취득 후 산업체, 교육 또는 연구 경력이 1년 이상인 자로 함
--

제12조 (행정전담인력)

- (1) 행정전담인력은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재료교육연구단 관리를 위해 아래 업무를 담당한다.
- ① 사업단 운영 및 참여인력 관리
 - ② 규정에 따른 사업비 관리
 - ③ 연구업적 정리 및 정량자료 작성
 - ④ 기관 주관의 행사 진행
 - ⑤ 신청서, 보고서, 평가자료 준비
 - ⑥ 재료교육연구단 제반 업무 및 기타 필요에 따라 지정되는 업무
- (2) 행정전담인력은 공개채용을 통해 선발한다.
- (3) 계약기간은 1년 단위로 하되 재료교육연구단이 유지되는 동안 갱신/연장할 수 있다.

제2장 재료교육연구단 관리 및 사업비 집행

제13조 (관리 및 집행 관련 규정)

- (1) 재료교육연구단 관리에 관한 사항은 '4단계 두뇌한국21 사업 관리 운영에 관한 훈령',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관리 운영 지침' 및 '서울대학교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운영 시행세칙'에 의거하여 집행한다.
- (2) 사업비 집행에 관한 사항은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및 '서울대학교 산학협

력연구 연구비 산정기준'에 의거하여 집행한다.

제14조 (참여교수 성과급)

(1) 매년 1월 참여교수의 업적성과와 기여실적을 평가하여 성과급을 산정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여 집행한다.

<p>I 교육 (최근 3년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의 및 학생지도 실적 - 대학원생 실적(게재논문, 산업재산권, 국제학술대회 발표) - 교육 프로그램의 국제화 실적 - 신규 교과목 개발 <p>II 연구 (최근 3년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술활동 실적(게재논문) - 연구과제 및 산학연구 실적(연구비, 산업재산권, 기술이전) - 국제협력활동 실적 <p>III 사업단 기여 (최근 1년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단 운영 참여 실적 - 대학원 교육 개선 참여 실적 - 사업단 행사 참여 실적
--

(2) 성과급은 차등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연간 최대 480만원 지원)

제15조 (참여대학원생 지원)

(1) BK연구장학금 지원을 위하여 참여교수 연구실에서는 참여대학원생 중 아래 기준을 참고하여 지원대학원생을 선정하여 지원한다.

<p>I 참여대학원생 연구활동 실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 저명학술지 게재논문 업적 - 학술대회 발표논문 편수 - 산업재산권 출원/등록 건수 <p>II 지도교수의 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대학원생 학업능력 - 참여대학원생 잠재력 <p>III 참여대학원생의 재료교육연구단/재료공학부/연구실 활동참여도</p> <p>IV 기타 (지급 기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입학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석사과정생, 석사수료생 또는 입학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석박사통합과정생 → 월 70만 원 이상 2. 입학한 지 4년이 지나지 않은 박사과정생 또는 입학한 지 6년이 지나지 않은 석박사통합과정생 → 월 130만 원 이상 3. 입학한 지 4년이 지나지 않은 박사수료생 또는 입학한 지 6년이 지나지 않은 석박사통합과정수료생 → 월 100만 원 이상
--

(2) '서울대학교 산학협력연구 연구비 산정기준'에 의거하여 모든 참여대학원생에게 아래와 같이 지원한다.

- ① 국제학술대회 참가경비: 국제학술대회에서 구두/포스터발표를 위해 참가하는 경우 (단, 국제(학술)대회 당 발표 논문별 저자 중 각 3인 이내의 참여대학원생에 대하여 지원이 가능하며, 참여교수는 지도하고 있는 참여대학원생이 발표논문의 저자로서 국제학술대회에 참여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논문발표가 아닌 단순 참가의 경우에는 총 3인 이내의 참여대학원생에 한해서만 지원.)
- ② 장단기해외 연수경비: 해외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활동(교육 포함)을 수행하는 경우 (단, 참여대학원생 중 연수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수기간 동안 연구장학금을 지급할 수 없음.)
- ③ 국제학술지 논문게재료
- ④ 국내외 산업재산권 출원등록비
- ⑤ 국내학술대회 참가시 등록비

(3) 창의적인 우수연구성과를 창출한 참여대학원생을 선정하여 시상/포상한다.

제16조 (신진연구인력 지원)

- (1) 신진연구인력에게 사업비에서 월 300만원(개인부담금, 퇴직금 포함)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계약기간은 1년 이상 2년 이내로 하되, 최대 4년의 범위내에서 갱신/연장 할 수 있다.
- (2) 아래와 같이 교육연구단 참여인력간 연계활동 강화 및 대외기관과의 융합연구를 장려한다.
 - ① 참여교수와의 공동연구
 - ② 참여대학원생의 논문지도
 - ③ 주요 연구기관과의 공동워크숍 참여
 - ④ 학부 및 대학원 교과목 강의 기회 부여
 - ⑤ 타교 단기강의 기회 부여
 - ⑥ 개인 사무용 공간 제공
- (3) '서울대학교 산학협력연구 연구비 산정기준'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지원한다.
 - ① 국제학술대회 참가경비: 국제학술대회에서 구두/포스터발표를 위해 참가하는 경우
 - ② 장단기해외 연수경비: 해외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활동(교육 포함)을 수행하는 경우
 - ③ 국제학술지 논문게재료
 - ④ 산업재산권 출원등록비
 - ⑤ 국내학술대회 등록비

제17조 (해외석학초청 지원)

- (1) 최신 연구기술 및 최첨단소재 연구동향 파악을 위해 재료교육연구단 및 참여교수의 해외석학 초빙계획을 취합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한다.
- (2) 서울대학교 산학협력연구 연구비 산정기준'에 의거하여 경비를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 ① 지원항목: 강연료, 항공료, 국내 체재비
 - ② 아시아/오세아니아 소속 해외석학초청 경비: 총 200만원 이내
미국/유럽 소속 해외석학초청 경비: 총 300만원 이내

제18조 (평가) 연 1회 이상 교육연구단 운영 전반에 걸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연구재단에 제출한다. 연구재단의 일정에 따라 연차점검, 중간평가, 종합평가 자료를 제출한다. 사업비 집행의 적정성 및 사업계획의 진행상황을 평가하고, 추후 계획을 설립한다.

제3장 재료교육연구단 간접비 직무수행경비 집행에 관한 운영세칙

제19조 (목적) 이 규정은 서울대학교 창의인재 재료교육연구단 규정에 의거 BK21사업의 간접비 직무수행 경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재료교육연구단 간접비 각종 수당 계상 기준

구분	월지급액 (원)	비고
교육연구단장	550,000	직무수행경비
교육연구부단장	495,000	직무수행경비

부칙

이 규정은 2021년 07월부터 시행한다.